

## 1. 지정목적

-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

## 2. 근거법령 및 규정

- 「의료법」 제3조의4
-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,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등

## 3. 지정기간

-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
## 4. 지정규모

-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 수를 충족하는 범위
  -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,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
- \*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'23.11월~12월경 고시할 예정

## 5. 신청대상과 절차

### 가. 신청대상 의료기관

-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(중앙, 권역 또는 지역)로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

## 나. 신청서 제출

○ 제출기간 = '23. 7. 1.(토) ~ '23. 7. 31.(월) 18시까지(도착분에 한함)

### ○ 제출서류

①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('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' 별지 제1호 서식)

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자료 등록증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평가자료 등록 후 등록증과 지정신청서를 출력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

※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-평가시스템(<http://aq.hira.or.kr>) → 인증서로그인 → 지정신청 →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

※ 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(033-739-5841~4, 5840)

- 평가 등록자료 : 시설.장비.의료인력 현황 등

※ 제출된 자료가 허위작성 또는 청구 오류 및 누락 등이 우려되는 기관은 현지조사를 강화(전수조사 등)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 평가 강화 예정

### ○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e-mail 접수

◇ 제출처 :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

- 웹 메일 : [jws8221@korea.kr](mailto:jws8221@korea.kr)

- 우편접수

•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(정부세종청사 10동 4층, 우:30113)

• 전화번호 : (044) 202-2479, 2474

\* 우편 접수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것

\* 서류제출 후 접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반드시 확인

## □ 절대평가(지정기준 미충족 시 탈락)

구분	지정기준
진료 기능	· 필수진료과목(9개)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
	· 중앙,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
교육 기능	· 레지던트 수련병원
인력	· (의사)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
	· (간호사)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.3명당 1명 이상
시설	· 성인소아와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, 시설규격 준수(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참고)
	·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
	· 진료 등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(3명(의료인2명)→6명(의료인3명))
	·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
장비	· 특수의료장비(CT, MRI, Mammography)는 품질검사기관검사결과 '적합'
환자 구성 상태	·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4% 이상
	·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2% 이하
	·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7% 이하
의료 서비스 수준	·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

## □ 상대평가(진료권역 신청기관이 소요병상 수를 초과한 경우 적용, 평가결과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, 104점 만점)

## ○ 기본항목(100점)

구분	지정기준				
환자 구성 상태 및 회송체계 (50%)	·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(34%~50%를 6점~10점으로 배분)				
	·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 (7%~2%를 6점~10점으로 배분)				
	· 경증 회송률 (0.1%~3%를 6점~10점으로 배분)				
인력 (30%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사</td> <td>·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(10명 이하 6점~4명 이하 10점) · 입원환자전담전문의 (기준병상당 수 0명 초과~1명을 0.5점~1점, 팀구성 현황 1형~3형을 0.3점~1점)</td> </tr> <tr> <td>간호사</td> <td>·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(2.3명 이하 6점~1.9명 이하 10점)</td> </tr> </table>	의사	·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(10명 이하 6점~4명 이하 10점) · 입원환자전담전문의 (기준병상당 수 0명 초과~1명을 0.5점~1점, 팀구성 현황 1형~3형을 0.3점~1점)	간호사	·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(2.3명 이하 6점~1.9명 이하 10점)
	의사	·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(10명 이하 6점~4명 이하 10점) · 입원환자전담전문의 (기준병상당 수 0명 초과~1명을 0.5점~1점, 팀구성 현황 1형~3형을 0.3점~1점)			
간호사	·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(2.3명 이하 6점~1.9명 이하 10점)				
교육기능 (10%)	·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(과목당 1점, 6과목 6점~10과목 10점) ·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영역 평가 결과				
의료 서비스 수준(5%)	· 5개 영역별 영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 수 또는 환산점수 적용				
공공성(5%)	·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(8%~10%를 1점~2점)				
	·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(0.8%~1%를 1점~2점)				
	·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(코로나19 중증('21년) 및 준중증이상('22년) 환자 진료실적)				

※ 환자구성상태는 '21.1.1.~'22.5.31.까지는 4기 기준, '22.6.1.~'23.6.30.까지는 5기 개정 기준 적용

○ 가·감점항목

구분	지정기준
가 점	·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 교육 협약 여부(2점)
	· 환자구성비율 관련 입원중증환자(2점) (중증응급질환 비율 6%~35%를 0.6점~1점으로 배분, 희귀질환 비율 0.4~1.3%를 0.6점~1점으로 배분)
감 점	·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(5점)

□ 예비평가

- 제5기 평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으며, 차기 지정·평가 지표로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항목임

평가지표	내용
①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	· 전국 의료기관 대비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용한 중증 소아응급환자 규모(=중증 소아응급환자 표준화 진료량) 및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 대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중증 소아응급환자 규모(=필수의료 지역친화도)
②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	· 전국 의료기관 대비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용한 중증응급환자 규모(=중증응급환자 표준화 진료량) 및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 대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중증응급환자 규모(=필수의료 지역친화도)
③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	·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(처치·수술·시술 또는 입원)를 제공한 비율
④ 간호교육전담인력 확보율	· 병상규모별 간호교육 여력 측정 * 병상규모별 배치된 교육전담인력 인원수에 따라 차등 평가